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26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년 3월 10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10조제1항의 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규정과 안 제10조제2항의 수사기관 관계자, 관련 전문가, 유관기관 관계자 등 특정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 권한인 임명·위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.
- 따라서 자문위원회 설치와 위원 구성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 안 제10조제1항은 삭제하고, 안 제10조제2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10조제1항을 삭제함.
- “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” 를 “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” 로 수정함(안 제10조제2항).
- 안 부칙의 단서를 삭제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1항은 삭제하고, 안 제10조제2항 중 “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”를 “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안 부칙의 단서를 삭제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료 제작 시 수사기관 관계자, 관련 전문가,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 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에는 수사기관 관계자, 관련 전문가,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예방교육 표준안 제공) ①·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예방교육 표준안 제공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료 제작 시 수사기관 관계자, 관련 전문가,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9조(홍보 등) ① 교육감은 학생의 유 해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하여 매 체 등을 활용한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 (생 략)</p>	<p>제9조(홍보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자문위원회) ① (생 략) <u>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학교보 건법」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 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0조(자문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에는 수사기 관 관계자, 관련 전문가,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.</u></p>